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0479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 (주)신도리코 內 / TEL. (02-460-1105) / FAX (02-464-3194)

2020. 9. 1

가헌신도 : 제2020-04호

수 신 : 서울대학교 총장

참 조 : 장학담당자

제 목 : 장학생 추천 의뢰

1.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전념하시는 귀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재단에서는 2020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에 의거 귀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의뢰하오니 응신기한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 천 기 준 : 별첨 장학생 추천 안내서 참조

2. 대 상 인 원 : 이공계대학 3명

3. 수 혜 기 간 : 2020년도 2학기

4. 구 비 서 류

1) 지원서 (서식 1)

2) 추천서 (서식 2)

3) 환경조사서 (서식 3)

4) 서약서 (서식 4)

5) 성적증명서 (20년 1학기 or 전체 학기)

6) 재학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8)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9) 이종지원방지제도 서약서

10) 등록금 영수증 (20년 2학기)

5. 응 신 기 한 : **2020년 9월 15일(화)까지**

6. 제 출 방 법 : 우편발송 or 이메일로 신청

7. 제 출 처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 (재)가헌신도재단

(담 당 : 김현선 / 02-460-1105 / earla4040@nate.com)

별 첨 : 1. 장학생 추천안내서 1부

2. 장학생 지원양식 일체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이사장 우석형



장학생 추천안내서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추천대상	<p>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본 재단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학교 이공계 재학생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 외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학비의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고있지 아니한 학생 <p>(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에 의거하여 등록금 한도내에서만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 수령후 대출상환을 해야함)</p>										
추천의뢰인원	3명										
지급액	최대 300만원										
수혜기간	2020년도 2학기										
제출서류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장학생 지원서 (서식 1호)</td> <td style="width: 50%;">2. 장학생 추천서 (서식 2호)</td> </tr> <tr> <td>3. 환경조사서 (서식 3호)</td> <td>4. 서약서 (서식 4호)</td> </tr> <tr> <td>5. 성적증명서 (20년 2학기 or 전체학기)</td> <td>6. 재학증명서</td> </tr> <tr> <td>7.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td> <td>8. 개인정보활용 동의서</td> </tr> <tr> <td>9. 이중지원방지제도 서약서</td> <td>10. 등록금 납부영수증 (20년 2학기)</td> </tr> </table>	1. 장학생 지원서 (서식 1호)	2. 장학생 추천서 (서식 2호)	3. 환경조사서 (서식 3호)	4. 서약서 (서식 4호)	5. 성적증명서 (20년 2학기 or 전체학기)	6. 재학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8.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9. 이중지원방지제도 서약서	10. 등록금 납부영수증 (20년 2학기)
1. 장학생 지원서 (서식 1호)	2. 장학생 추천서 (서식 2호)										
3. 환경조사서 (서식 3호)	4. 서약서 (서식 4호)										
5. 성적증명서 (20년 2학기 or 전체학기)	6. 재학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8.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9. 이중지원방지제도 서약서	10. 등록금 납부영수증 (20년 2학기)										
제출기한	2020년 9월 15일(화)까지										
제출방법	아래 제출처로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										
제출처	<p>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 (썬신도리코 內)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우. 04797) (TEL. 02-460-1105 / 김현선 매니저 / earla4040@nate.com)</p>										
기타	<p>① 장학생 선발결과는 심의후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p> <p>② 추천된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20px;">: 재단에서 학교 계좌로 송금, 학교에서 장학생에서 장학금 지급</p> <p>* 문의사항은 위 제출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서식 4호]

서 약 서

본인은 귀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귀회 규정 및 기타
이행사항을 준수하며, 학업에 충실하여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소 속	학교	학과	학년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인)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이하 '가헌신도재단')의 학자금지원(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신청인으로서 가헌신도재단으로부터 학자금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학 자 금 종 류	대출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